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. 2. 7 선고 2017가단15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
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1. 17.

판결 선고2018. 2. 7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9. 3. 15. 접수 제2657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가단177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. 10. 25. 'B는 원고에게 28,165,8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'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2006. 11. 16. 확정되었다.

한편, B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7. 9. 10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,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9. 3. 15. 접수 제265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.

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두희

별지